

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1 개정사유

- ‘개인정보 보호법’의 제정(2011.9.30. 시행)에 따라 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’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

2 개정안 주요내용

- 기증·위탁 동의 및 제대혈정보센터 운영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조항 신설

3 기대효과

- 제대혈은행의 장 및 제대혈 채취 의료인 등이 제대혈은행 허가 및 제대혈 정보관리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12. . . (제 회)	

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임채민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12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침

## 1. 의결주문

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이 제정(법률 제10465호, 2011. 3. 29. 공포, 9. 30. 시행)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제대혈 기증 및 위탁 동의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12. 3. 6. ~ 3. 26.) 결과, 특기할 사항  
없음

##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부칙

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제대혈은행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대혈 기증 및 위탁 동의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,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② 제대혈을 채취하는 의료인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제대혈 채취 동의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(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11조에 따른 제대혈은행 허가·신고에 관한 사무
2.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처리에 관한 사무
3.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·운영에 관한 사무
4. 법 제24조에 따른 제대혈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 및 기증제대혈에 관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 설>	<p>제20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제대혈은행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대혈 기증 및 위탁 동의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,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대혈을 채취하는 의료인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제대혈 채취 동의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</p> <p>③ 보건복지부장관(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</p>

- 다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1. 법 제11조에 따른 제대혈은행 허가·신고에 관한 사무
  2.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처리에 관한 사무
  3.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·운영에 관한 사무
  4. 법 제24조에 따른 제대혈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 및 기증 제대혈에 관한 정보의 등록에 관한 사무

**엠바고: 8.7(화) 국무회의  
시작(8시) 후**

**담당부서: 생명윤리정책과  
(02-2023-7614)**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	
연 락 처	(02) 2023 - 7614~5